



전라남도 도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제 2015-36호

2015년 8월 5일 (수)

발행 : 전라남도 / 편집 : 대변인실
홈페이지 www.jeonnam.go.kr



목 차

◆ 조 례

- | | |
|----------------|--------------------------------------|
| 전라남도 조례 제3941호 | 전라남도 나무심기 지원에 관한 조례 |
| 전라남도 조례 제3942호 | 전라남도 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 전라남도 조례 제3943호 | 전라남도 농업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 전라남도 조례 제3944호 | 전라남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 |
| 전라남도 조례 제3945호 | 전라남도 완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 전라남도 조례 제3946호 |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
| 전라남도 조례 제3947호 | 전라남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전라남도의회 제29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15. 7. 15.)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나무심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 8. 5

전라남도지사 이낙연

전라남도 조례 제3941호

전라남도 나무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나무를 심고 가꾸는 활동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나무심기”란 산림, 공원, 도로변 자투리 땅, 국유·공유 유휴토지, 농촌마을 빈터, 한계농지 등에 경관 창출과 소득이 되는 나무와 꽃을 심고 가꾸는 것을 말한다.
2. “숲 조성 활동”이란 민·관이 협력하여 지속적인 나무심기로 전남을 아름다운 숲과 공원으로 가꾸는 데 필요한 제반 활동을 일컫는다.
3. “나무은행”이란 도로개설,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과정에서 버려지는 나무의 이용가치 향상을 위해 조정적 가치가 있는 나무를 이식·보관·관리하고 필요시 용도에 따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나무심기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장기 나무심기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 또는 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와 협력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나무심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시장·군수에게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제2장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5조(추진협의회 구성) ① 나무심기와 숲 조성 활동에 필요한 자문, 기술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하여 나무심기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산림산업과장으로 한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나무심기 활성화를 위한 범 도민 참여
2. 지역에 적합한 수종선정 및 나무심기에 관한 기술적 지원
3. 나무심기 유형·관리 프로그램 개발·보급
4. 숲 조성 활동 관련 홍보, 교육, 우수사례 발굴·보급
5. 산림경관의 보전·관리 활동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나무심기와 관련한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2. 산림·조경·디자인·경관·환경·관광 등 관련 전문가와 사회단체 대표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 중심의 안전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전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전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을 그 안전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전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는 등 협의회 활동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하는 정기회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3장 나무심기 지원 및 포상

제13조(나무심기 지원) ① 도지사는 민간단체에서 나무심기를 하고자 할 경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과 범위 등 구체적 지원기준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정한다.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 나무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나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① 도지사는 숲 조성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성과를 거양한 시군과 민간단체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 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전라남도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의회 제29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15. 7. 15.)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 8. 5

전라남도지사 이낙연

전라남도 조례 제3942호

전라남도 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한 사회복지 서비스기능을 강화 하기 위해 전라남도 사회복지회관을 설치하고 그것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전라남도 사회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 읍 오룡3길 22에 둔다.

제3조(회관의 기능) 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사회복지자원의 연계, 협력의 지원 및 자원활용 기반 구축
- 2. 사회복지서비스 및 자원에 관한 정보 제공
- 3. 사회복지종사자의 역량강화 교육
- 4.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사무공간의 지원
- 5. 그 밖에 사회복지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사용·수익 허가) ① 회관을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회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등을 대상으로 회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 ① 도지사는 회관의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회관 사용료의 요율은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5로 한다.

제6조(관리의 위탁) ① 도지사는 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관리를 위탁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회관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관리수탁자에게 회관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위탁재산의 사용·수익 및 전대) ① 관리수탁자가 위탁받은 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할 경우에는 제4조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관리수탁자는 그 관리위탁 기간 내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관리수탁자 및 사용자의 의무) ① 관리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회관의 시설을 관리하여야 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곧 바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회관의 시설을 개조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칸막이공사 등 경미한 개조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관리위탁 및 사용허가의 취소) 도지사는 회관의 관리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관리위탁 및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0조(변상책임과 원상회복) 관리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제8조를 위반하여 고의·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제9조에 따라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소속 관계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회관의 관리·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고, 관리수탁자 또는 사용자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 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대관료의 납부와 감면) ① 회관의 시설물을 대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 표의 기준에 따라 시설 사용일 7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물의 대관료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라남도에서 직접 실시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여 실시하는 행사
2. 회관에 입주한 사용자가 직접 실시하는 행사

제13조(대관료의 반환) 제12조에 따라 징수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지 사 또는 관리수탁자의 사정으로 대관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며, 대관 신청자의 사정으로 취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반환한다.

1. 시설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전액 반환
2. 시설 사용일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50퍼센트 반환

제14조(자체 운영규정) 관리수탁자는 회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라남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시설 대관료 기준(제12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요 금	비 고
1. 기본시설			
가. 대회의실	1회(2시간)	40,000	○기준 경과 시 시간당 요금의 20퍼센트를 가산 징수한다.
나. 소회의실	1회(2시간)	20,000	
2. 냉방·난방			
가. 대회의실	1회(2시간)	20,000	○기준 경과 시 시간당 요금의 20퍼센트를 가산 징수한다.
나. 소회의실	1회(2시간)	10,000	

※ 단, 냉방·난방의 경우 제12조제2항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라남도의회 제29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15. 7. 15.)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농업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 8. 5

전라남도지사 이낙연

전라남도 조례 제3943호

전라남도 농업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농업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관람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입장시간은 관람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② 전라남도 농업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제1호의 “1인”을 “1명”으로 하고 “11인”을 “15명”으로 한다.

별표 1(관람료)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의회 제29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15. 7. 15.)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 8. 5

전라남도지사 이낙연

전라남도 조례 제3944호

전라남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전통주 산업육성으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화와 정을 담은 전통주를 계승·발전 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술”이란 「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알코올분(分)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6도 미만의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지역전통주”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술로서 전라남도내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생산·제조되는 술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전통주 산업육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건전한 술 문화를 조성하여 전통주 소비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제조업자의 협력) 제조업자는 지역 전통주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등 지역 전통주 소비촉진을 위한 도정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훈련) ① 도지사는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건전한 소비문화 장려를 위하여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운영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홍보활동) ① 도지사는 지역전통주의 홍보, 산업육성 및 전통적인 제조방법을 장려하기 위하여 홍보전시나 홍보관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지역의 우수전통주를 선정할 수 있으며, 홍보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지역전통주 우선 이용) 도지사는 지역전통주의 소비촉진을 위해 각종 공식행사에서 지역전통주를 우선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지역전통주 산업육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의회 제29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15. 7. 15.)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완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 8. 5

전라남도지사 이낙연

전라남도 조례 제3945호

전라남도 완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완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완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의회 제29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15. 7. 15.)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 8. 5

전라남도지사 이낙연

전라남도 조례 제3946호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는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기관(이하 “소방기관”이라 한다)이 설치되지 아니한 면지역에서 운영할 수 있다.

②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전문의용소방대(이하 “전문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방·전기·가스·기계·화학(화공 및 위험물을 포함한다)·토목·건축·정보통신 또는 사회복지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의료인 및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산악 및 수상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4. 1종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
5. 견인차·중장비 또는 덤프트럭 등 소방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사람
6.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의학·공학 등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7. 그 밖에 소방활동과 관련하여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의용소방대의 하부조직으로 지역의용소방대(이하 “지역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의용소방대의 표지 등)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기(旗) 및 표지는 의용소방대의 활동과 공익목적 등에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2장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및 조직 등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①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소방서장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의용소방대 입대신청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문을 소방기관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은 피추천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1항에 따른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우선 임명할 수 있다.

④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과 의용소방대장 및 지역대장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제3호 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⑤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경리, 조달 및 장비·물품 관리를 담당하는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 재정보증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등) 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의용소방대원 해임통지서를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법 제4조1항1호의 경우에는 해임통지서를 보내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용소방대원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조직) ① 제2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대의 지역의용소방대장(이하 “지역대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장의 명을 받아 소속 지역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의용소방대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지역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고 소방서장이 임명한다.

③ 지역대에는 부대장을 두지 아니하고, 지역대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무부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④ 의용소방대장(전문의용소방대장을 포함한다. 이하 “대장”이라 한다)이 의용소방대원 직위를 변경(부대장으로의 직위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4항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정원) ①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

1. 시지역 : 40명 이내
2. 읍지역 : 35명 이내
3. 면지역 : 25명 이내
4. 전문대 : 20명 이내
5. 지역대 : 15명 이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서장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정원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지역대를 통합하는 경우에는 사퇴, 해임, 정년 등으로 대원의 수가 정원에 도달할 때 까지 별도 정원으로 본다.

제8조(신분증 재발급 신청) 의용소방대원이 신분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의용소방대원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개인정보) 법 또는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의용소방대 운영과 관련하여 의용소방대원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별표 제7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3장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제10조(구성) ①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2.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원
3. 소방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한다. 이 경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심의) ① 규칙 제12조제2항제4호의 “그 밖에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9조에 따른 성과중심의 보상심의에 관한 사항(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2. 제24조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3. 의용소방대 또는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용소방대원은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고 외부위원에게는 수당 등 실비를 지

급할 수 있다.

제12조(절차) ① 운영위원회는 규칙 제12조제2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별지 제8호 서식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의용소방대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별지 제9호 서식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대장 등 추천) ① 소방서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장 및 부대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추천예정 인원의 2배수 이상을 운영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

② 대장 및 부대장이 되려는 사람은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심의 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4장 복무와 교육 및 훈련

제14조(전담의용소방대) ① 관할 소방서장은 전담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방 관련 경력자 등을 운영지도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지도관은 법 제3조와 규칙 제11조제1항을 적용받지 않으며 별도 정원으로 본다.

② 운영지도관의 복무나 근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장이 정한다.

③ 전담의용소방대장은 장비운영에 필요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지정 운영하여야 하며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서 진압과 인명구조 등 피해경감에 필요한 초기 현장활동에 주력한다.

④ 전담의용소방대원의 출동대기 근무는 전일근무(근무일 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부분근무(주간 또는 야간근무로 주간근무는 근무일 09:00부터 18:00까지, 야간근무는 근무일 18: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근접대기 근무(근무지 인근에서 대기하는 근무)로 구분하고 지역특성(농번기 등)을 고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전담의용소방대의 복무와 근무방법은 제4항을 고려하여 전담의용소방대장이 따로 정한다.

⑥ 전담의용소방대장은 전담의용소방대를 책임 운영하며 제5항에 따라 따로 정한 복무 및 근무방법 등에 대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전담의용소방대원이 출동대기 근무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대기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소방장비 등 물품 유지·관리) 의용소방대장은 법 제10조제3항 및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는 소방장비 등 물품을 「소방장비관리규칙」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복무에 대한 지도·감독) ① 법 제12조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각각 연 1회 이상 의용소방대원의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용소방대원은 제1항에 따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도·감독에 적극 협

조하여야 한다.

- 제17조(교육 및 훈련)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이하 “교육·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② 대장 및 부대장은 임명 후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학교장이 실시하는 의용소방대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③ 의용소방대원이 신규로 임명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교육·훈련 실적을 의용소방대원 개인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⑥ 의용소방대원이 소방본부, 소방학교, 한국소방안전협회 등에서 집합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월중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⑦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 및 그 밖에 활동이 필요하여 소집한 경우에는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의용소방대원의 경비 및 재해보상 등

- 제18조(소집수당 등) ① 의용소방대원이 법 제15조에 따른 소집수당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소집수당 신청서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소방출동(활동) 기록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00원 미만을 절사한다.
- ③ 소집수당은 1회 소집시 임무를 수행한 총 시간 중 분 단위를 절사한 시간으로 지급한다.
- ④ 전담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하는 소집수당은 출동대기 근무 수당으로 지급하며 전일근무의 경우 1일 8시간, 부분근무 중 주간근무는 5시간, 야간근무는 6시간, 근접대기의 경우 2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야간 및 전일근무자에게는 1인 1회 간식비를 5천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9조(성과중심의 보상)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실적을 반영하여 성과중심의 보상 또는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퇴임하는 때에는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다.
-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법 제7조 각 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적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전라남도 포상 조례」 또는 지침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성과보상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의용소방대원에게 국내·외 견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20조(재해보상) ① 재해보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대장을 경유하여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청구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의용소방대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애보상: 해당 의용소방대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의용소방대원이 사망한 날

②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되,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재해보상금 수령을 위임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제21조(경비부담)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의용소방대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부담한다.

1.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물품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에 필요한 소요경비
3.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
4. 재난현장 초동대응 강화 관련 지역주민 대상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

제6장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

제22조(설립) ①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지역연합회”라 한다)는 남성의용소방대연합회와 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로 구분하여 설립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남성의용소방대연합회와 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며 대표 연합회장을 둔다.

② 지역연합회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에 설립된 지역연합회 : 전라남도 남·여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도연합회”라 한다)
2. 시·군에 설립된 지역연합회 : ○○소방서 ○○시·군 남·여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소방서 시·군연합회”라 한다).

③ 지역연합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용소방대원 복지증진 및 소방업무 수행능력 향상 도모
2. 의용소방대 상호 간 소방업무 관련 정보 교환 및 협력 강화
3. 도 및 시·군 등의 협조 요청에 따른 지원

제23조(조직 및 구성) ① 지역연합회에는 남·여연합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 및 사무처장(국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연합회에는 남·여연합회장 각 1명, 남·여부회장 각 3명, 남·여감사 각 1명, 남·여이사 각 3명 및 남·여사무처장 각 1명을 임원으로 두고, 소방서 시·군연합회에는 남·여연합회장각 1명, 남·여부회장 각 1명, 감사 1명 및 사무국장 1명을 임원으로 둔다.

③ 지역연합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연합회 : 소방서 시·군 남·여연합회장
2. 소방서 시·군연합회 : 대장 및 지역대장

④ 지역연합회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법 제4조제1항제4호·제5호 및 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요구가 있어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있는 경우

⑤ 그 밖에 지역연합회 조직 및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역연합회칙으로 정한다.

제24조(회장 등의 선출) ① 지역연합회의 남·여연합회장은 지역연합회의 회원 자격을 가진 연합회장 또는 대장 중에서 선출하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한다.

②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이사, 사무처장(국장)은 남·여연합회장의 지명에 의하여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한다.

제25조(회장 등의 임기) ① 지역연합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지역연합회장 임기 중 대장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잔여임기를 보장한다.

② 부회장, 이사, 감사 및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6조(회의 등) ① 지역연합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역연합회의 회칙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
2. 지역연합회 기능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사항

③ 임시총회는 지역연합회의 회장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

집한다.

④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장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지역연합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역연합회 회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7조(경비지원) ① 도지사는 도연합회 및 소방서 시·군연합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는 소방서 시·군연합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28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의용소방대의 운영상 필요한 권한의 일부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립 및 구성된 도 및 시·군의용소방대연합회·연합회장 및 연합회 조직과 구성원은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에 따라 설립·조직·구성 및 선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연합회장과 여성회장(부회장)은 남성연합회장과 여성연합회장으로 보며 이 조례 개정 후 임명된 자부터 개정된 임기를 적용한다.

[별지 제2호서식]

임명장

○○소방서 ○○의용소방대

○○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함.

년 월 일

○○소방서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임명장

○○소방서 ○○○의용소방대
○○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
2항에 따라 ○○소방서 ○○○의용소방대 대장(부대
장)으로 임명함.

년 월 일

전라남도지사

직인

[별지 제4호서식]

의용소방대원 해임통지서

소속	직위	성명

이유	
----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임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의용소방대원 사직서

인적사항	성명(한글)		생년월일
	(한자)		
	소속	직위	재직기간
주소			
사직사유			

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중

210mm × 297mm [백상지 80g/㎡ (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의용소방대원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소속	직위
	성명(한글)	성명(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대원증번호	
	재발급 신청 사유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

첨부서류	사진 2매
------	-------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의용소방대 운영,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내용기재)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0000년 00월까지(업무에 필요한 기간)

○ 기본 개인정보 수집·활용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소속, 이메일주소, 은행명 및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주민번호, 계좌번호가 없을 시 의용소방대 운영 및 각종 혜택이 제한될 수 있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활용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주민번호, 계좌번호가 없을 시 의용소방대 운영 및 각종 혜택이 제한될 수 있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출석요구서

인적사항	성명	소속
	주소	

출석 이유	
출석 일시	년 월 일 시 분
출석 장소	

유의사항	
<p>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p> <p>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p> <p>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p>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 또는 ○○소방서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위원장

청인

귀하

..... 자 르 는 선
진술권 포기서

인적사항	성명	소속
	주소	

본인은 귀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 또는 ○○소방서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위원장 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m²]

[별지 제9호서식]

의견서

인적사항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소속	직위	재직기간
	주소		
처분내용			
의견내용			
제출서류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중

유의사항

1. 기재란 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요양 [], 장애 [], 장제 [], 유족 [] 보상청구서

※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사고자	소속		전화번호
	주소		
	성명	생년월일	
청구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	생년월일	
	사고자와관계		
사고경위 및 요약	사고(사망)일시		
	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		
	요양(진단)병원		요양(진단)부위
	요양(진단)결과		요양기간
청구금액	요양보상		장애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
	청구금액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대장 :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제출서류	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인감증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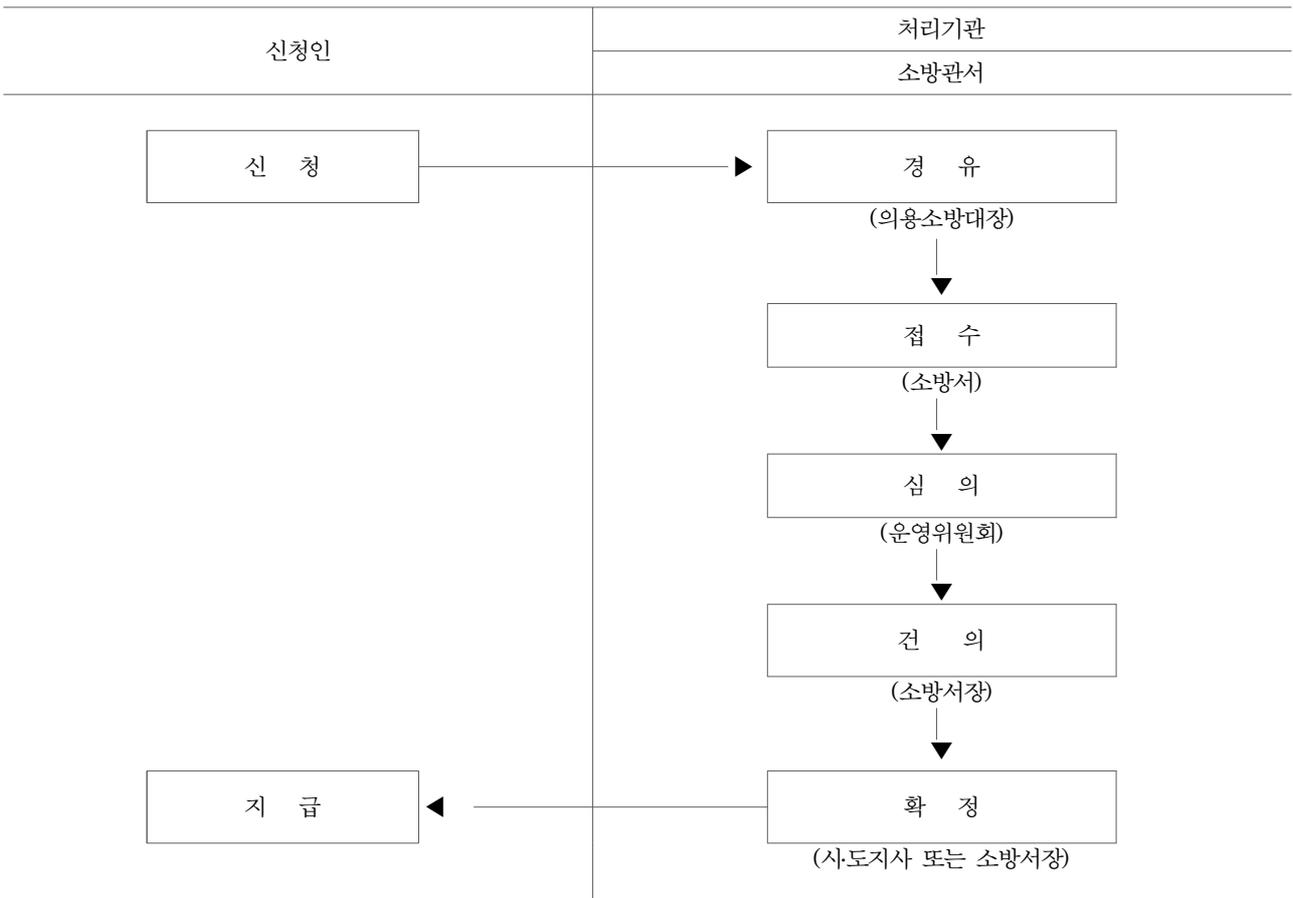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전라남도의회 제29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15. 7. 15.)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 8. 5

전라남도지사 이낙연

전라남도 조례 제3947호

전라남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라남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를 “전라남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도로법」 제64조” 를 “「도로법」 제52조” 로 하고, “기타” 를 “그 밖” 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변속차로” 라 함은” 을 ““변속차로” 란” 으로, “가속차로, 감속차로 및 테이퍼” 를 “차로” 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테이퍼” 라 함은” 을 ““테이퍼” 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부대시설” 이라 함은” 을 ““부대시설” 이란” 으로, “가드레일” 을 “방호울타리” 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부가차로” 라 함은” 을 ““부가차로” 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교차로” 라 함은” 을 ““교차로” 란” 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연결로” 라 함은” 을 ““연결로” 란” 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호부터 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측도(側道)” 란 자동차가 도로 주변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본선 차도에 병행하여 설치하는 도로를 말한다.
10. “교통섬” 이란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을 말한다.
11. “길어깨” 란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2. “연석(緣石)” 이란 보도 등과 차도의 경계선에 연접하여 설치하는 경계석을 말한다.

제3조제1항중 “「도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 를 “「도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5조” 로 하고, “(도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지방

도를 제외한다. 이하 “도로” 라 한다)” 를 “(「도로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지방도를 제외한다, 이하 “도로” 라 한다)” 로 하며, “기타” 를 “그 밖” 으로 하고, “(이하 “다른 도로 등” 이라 한다)를 (이하 “다른 시설” 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64조제2항” 을 “법 제52조제1항” 으로 하고, “다른 도로 등” 을 “다른 시설” 로 하며, “도로 등의 연결허가신청서” 를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 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도로 등의 연결허가신청서” 를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 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다른 도로 등” 을 “다른 시설” 로 한다.

제4조제6항 중 “연결허가 변경신청서” 를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변경내용 관계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다른 도로 등” 을 “다른 시설” 로 하고,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하 “도시관리계획” 이라 한다)에 따라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 등의 연결허가신청일 당시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단계별집행계획 중 제1단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 이라 한다)이 수립되어 있는” 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도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이하 “도시·군관리계획” 이라한다)에 따라 정비되어 있는 경우
2.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일에 해당 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1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제5조제2항 전단 중 “다른 도로 등” 을 “다른 시설” 로 하고, “도로 등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 를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 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른 도로 등” 을 “다른 시설” 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단서 중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이미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 등의 연결허가신청일 당시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도로에는” 을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곡선반경” 을 “곡선반지름”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별표 4의 교차로 영향권 산정기준에서 정한 영향권 이내의 구간 및 별표 4의2의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 등의 설치제한거리 이내의 구간” 을 “별표 4의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 기준에서 정한 금지구간 이내의 구간”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 5가구” 를 “다만,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5가구” 로 하고, “경우와 도시지역 안에 있는 도로로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이미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 등의 연결허가 신청일 당시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교차로 영향권 산정 기준에서 정한 영향권 이내의 구간에 한한다” 를 “경

우에는 별표 4의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제한거리를 금지구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로 한다.

제7조 제목과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 중 “연결로” 를 각각 “변속차로” 로 한다.

제8조제4호 중 “테이퍼와 사업부지” 를 “사업부지” 로 하고, “곡선반경 15미터” 를 “곡선반지름 12미터” 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곡선반지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8조의2제3호 중 “곡선반경 15미터” 를 “곡선반지름 12미터” 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곡선반지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0조제2호중 “가드레일” 을 “방호울타리, 교통섬(별표 2 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에 따른 변속차로 등의 설치의 경우에 한정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0.3미터” 를 “0.3미터(교통섬은 0.12미터)” 로 한다.

제11조 제목 중 “연결로” 를 “변속차로”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가드레일 또는 울타리” 를 “방호울타리” 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가드레일” 을 “방호울타리” 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가드레일” 을 “방호울타리” 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2를 삭제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서식 제1호부터 별지 서식 제4호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변속차로등의 설계도면 작성요령(제4조제4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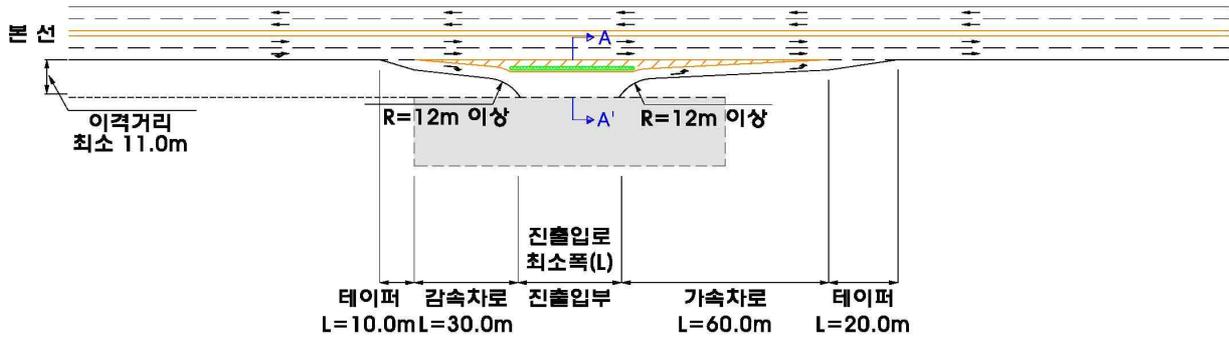
도 면 명	작 성 요 령
위 치 도	1/50,000(또는 1/25,000) 축척의 지형도에 연결 시설물의 위치 표시
평 면 도	연결부 주변의 지형·지물을 1/1,200 이상 축척으로 작성(접속되는 도로의 중앙선, 포장 끝선, 길어깨선, 도로부지 경계선, 접도구역선,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른 도류화시설, 배수시설, 분리대, 그 밖의 시설물의 위치 등을 표시. 다만, 도로대장 또는 국가지리정보 체계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제작된 기본도가 있는 경우에는 이와 연계하여 작성)
중 단 면 도	세로 방향 1/1,200 이상, 가로 방향 1/100 이상 축척으로 작성[측점(測點)은 20미터 간격으로 하되, 땅의 표면 높이가 급격히 변하는 지점을 추가 측점으로 설치]
횡 단 면 도	측점마다 1/100 이상 축척으로 작성(배수시설, 분리대, 도로의 중심선, 도로부지 및 접도구역의 경계선 등을 표시. 횡단면의 범위는 시공계획 폭 양쪽으로 연결 시설물의 영향이 미치는 부분까지 포함)
구 조 물 도	각종 구조물의 규격과 위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정확한 치수로 표시하여 작성
부 대 공 사 도	변속차로등과 관련하여 설치되는 부대시설(방호시설, 노면표시 등)에 대한 상세도 작성

[별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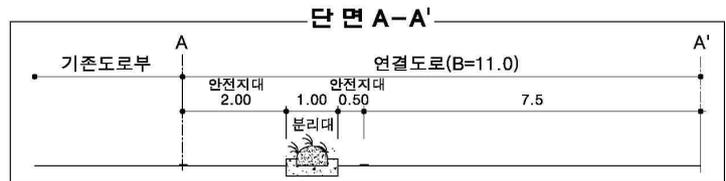
변속차로등의 설치방법(제4조제4항 관련)

1. 직접식 변속차로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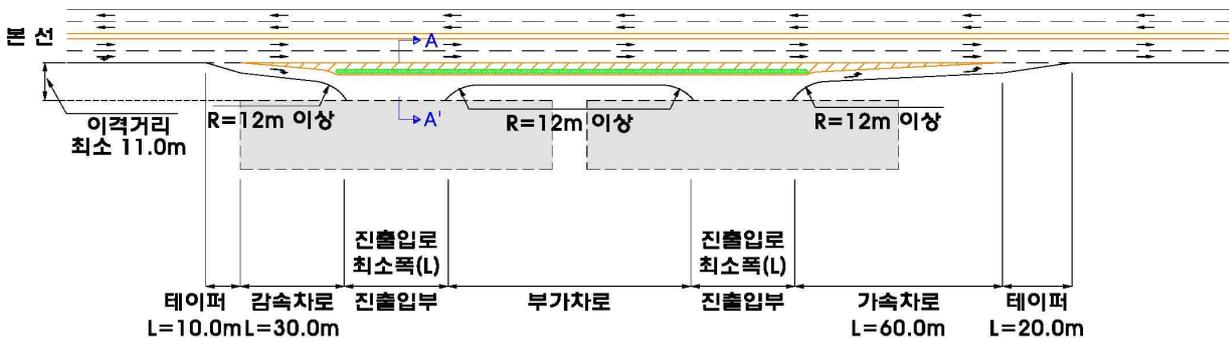
가. 1개소 연결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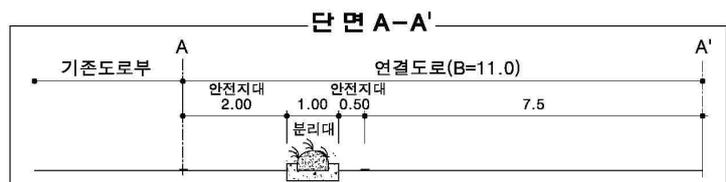
■ 사업부지



나. 2개소 이상 연결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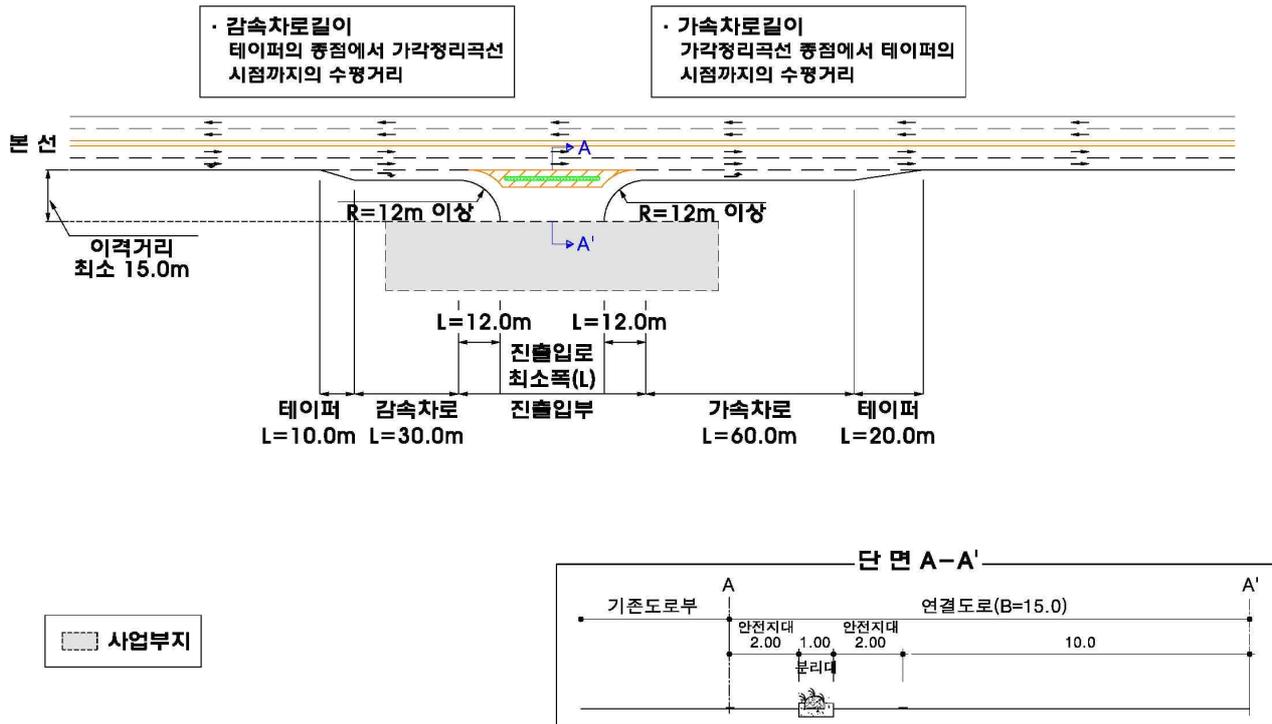


■ 사업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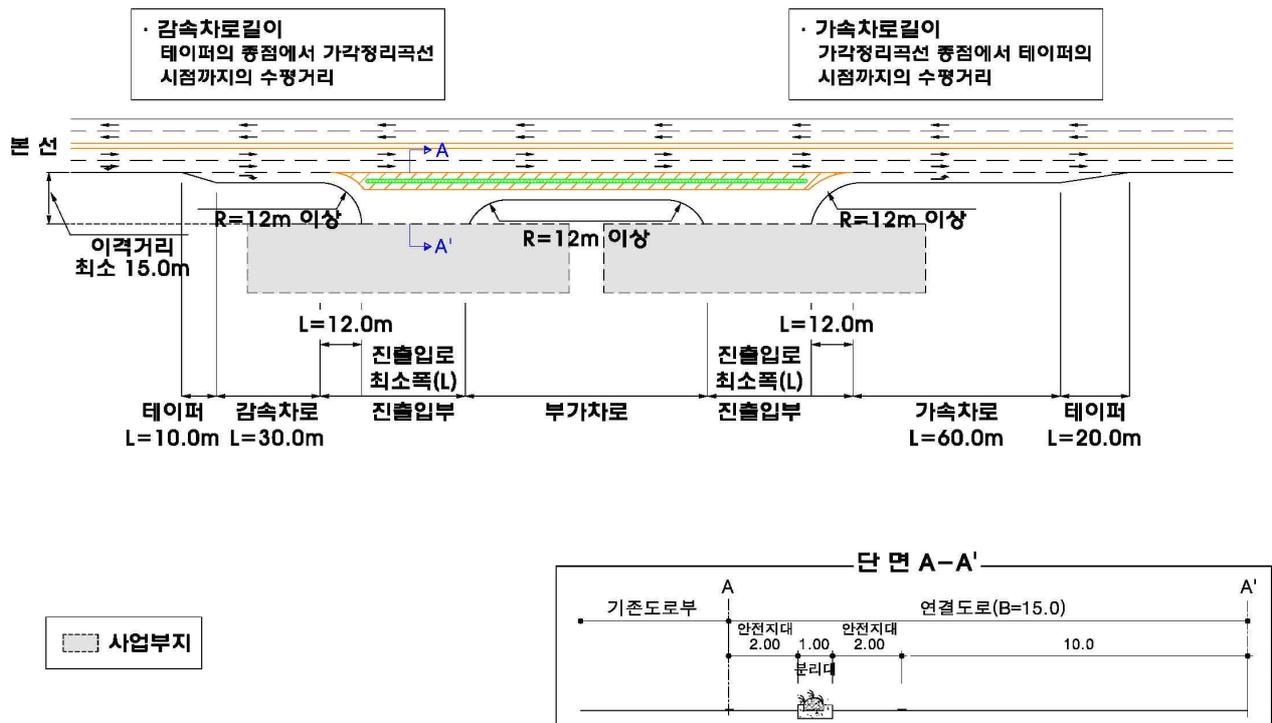


2. 평행식 변속차로 설치

가. 1개소 연결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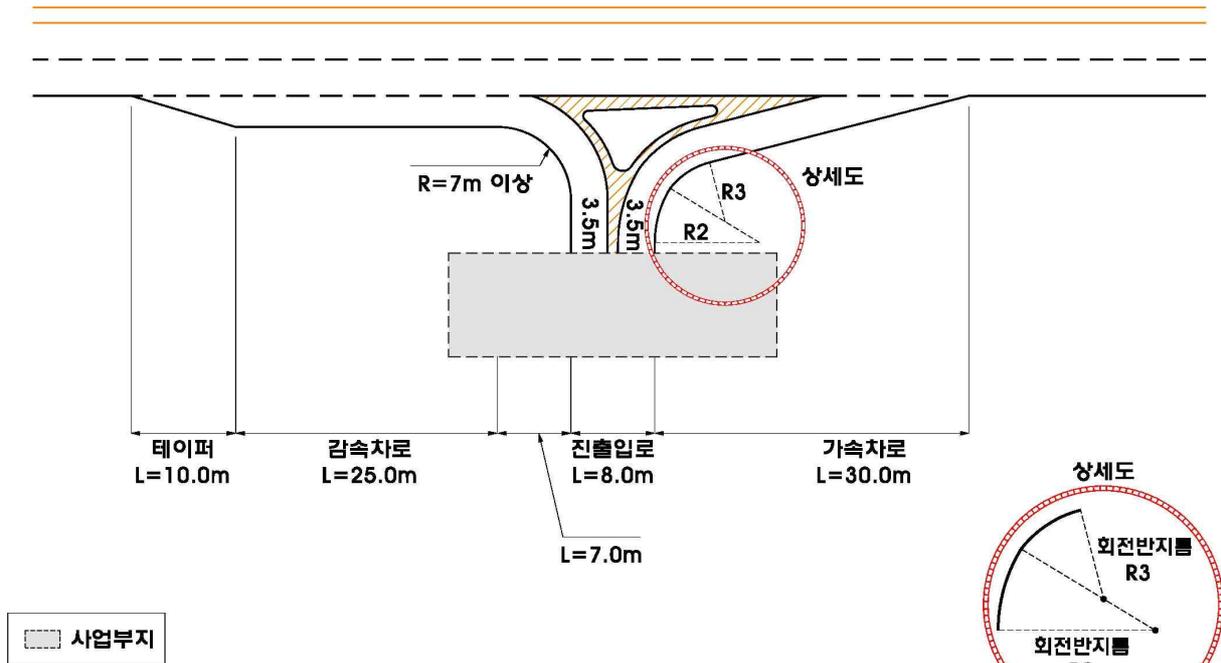


나. 2개소 이상 연결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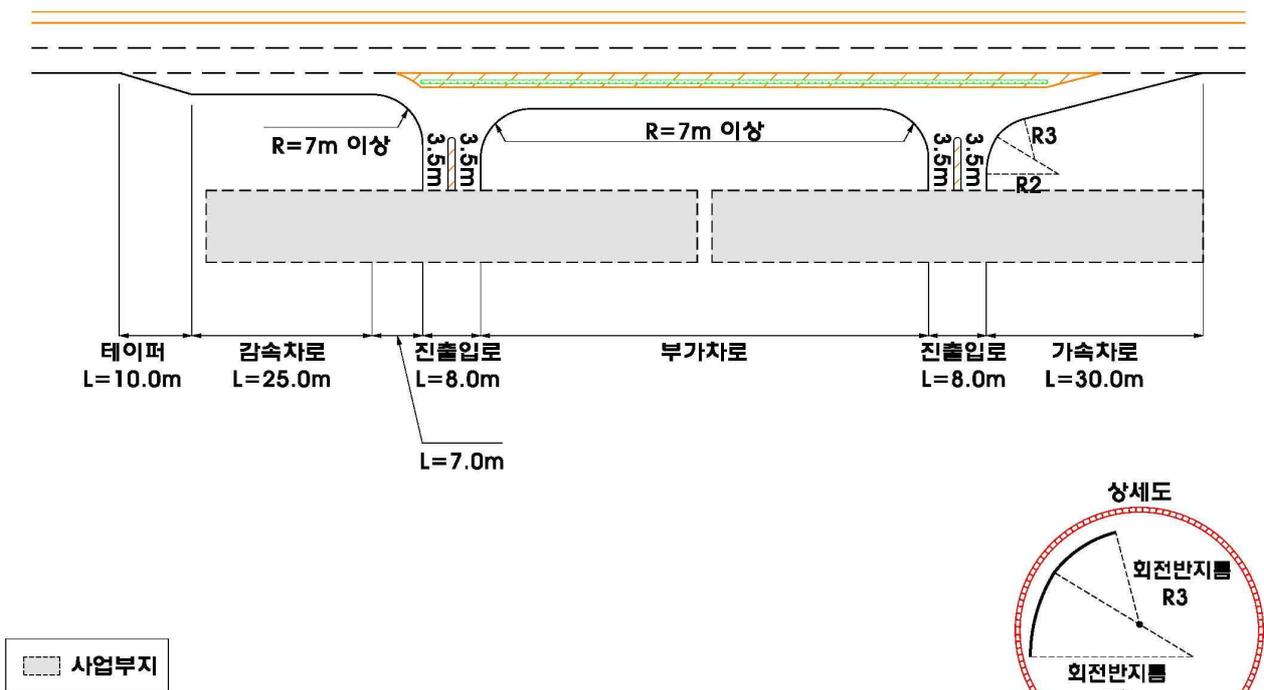


3. 평행식 감속차로와 직접식 가속차로 설치

가. 1개소 연결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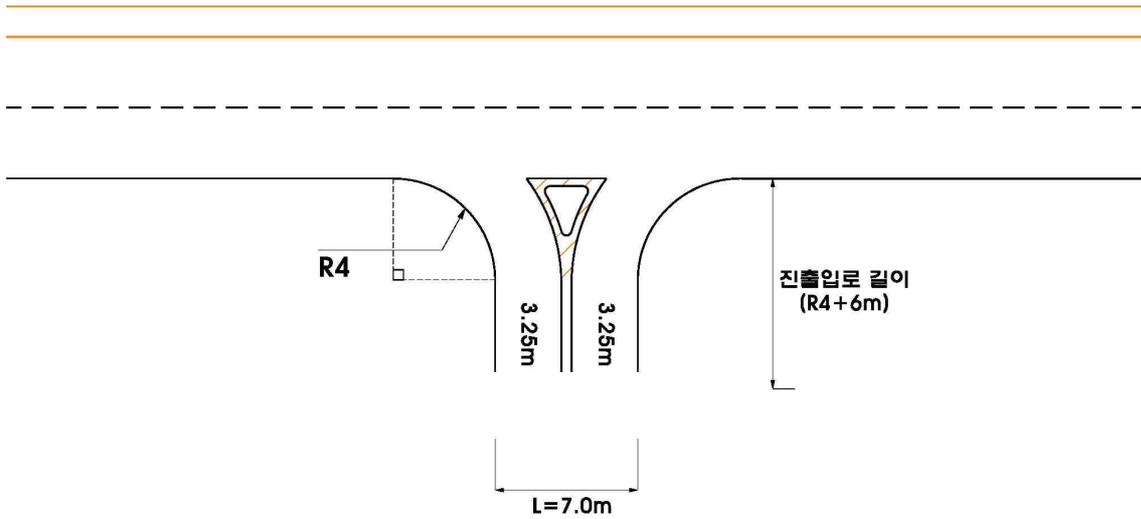


나. 2개소 이상 연결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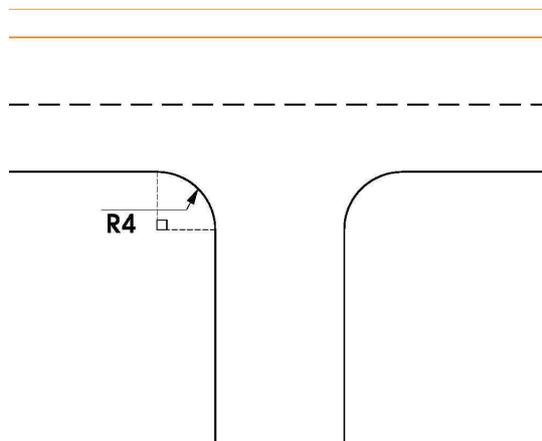


4. 도로의 모서리곡선화를 통한 변속차로 대체(代替) 설치

가. 곡선 반지름(R_4) 5미터 이상인 경우



나. 곡선 반지름(R_4) 3미터 이하인 경우



비고

1. 위 표 중 R은 곡선반지름, L은 길이를 말하며 그 단위는 미터(m)로 한다.
2. 사업부지와 변속차로등의 연결지점은 부지경계선 중 차량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부지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한다.
3. 위 표 중 이격거리는 본선 차도(길어깨를 제외한다)의 바깥쪽 차선과 사업부지 간의 최소 거리를 말한다.
4. 위 표 중 제1호와 제2호에서 진출입로 최소 폭(L)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소 20m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최소 10m로 한다.
 - 가. 별표 5 제1호의 시설란 중 가목, 나목, 마목, 바목(주차대수 51대 이상), 사목(주차대수 51대 이상), 아목(101가구 이상)
 - 나. 별표 5 제2호의 시설란 중 가목, 나목, 마목, 바목(주차대수 31대 이상), 사목(주차대수 51대 이상), 아목(101가구 이상)
5. 위 표 중 제3호가목과 제4호가목은 분리대를 교통섬의 형태로 설치할 수 있다.

6. 위 표 중 제3호에서 곡선 반지름 R_2 , R_3 의 크기는 가속차로의 길이에 따라 결정되며 그 최소 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가속차로의 길이(미터)	R_2 (미터)	R_3 (미터)
30	10	7
25	7	5
20	7	5

[별표 3]

곡선구간의 곡선반지름 및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제6조제1호 관련)

(단위: 미터)

구 분	4차로 이상				2차로		
	곡선반지름	260	240	220	200	120	100
최소거리	7.5	8	8.5	9	7	8	9

비 고: 최소거리는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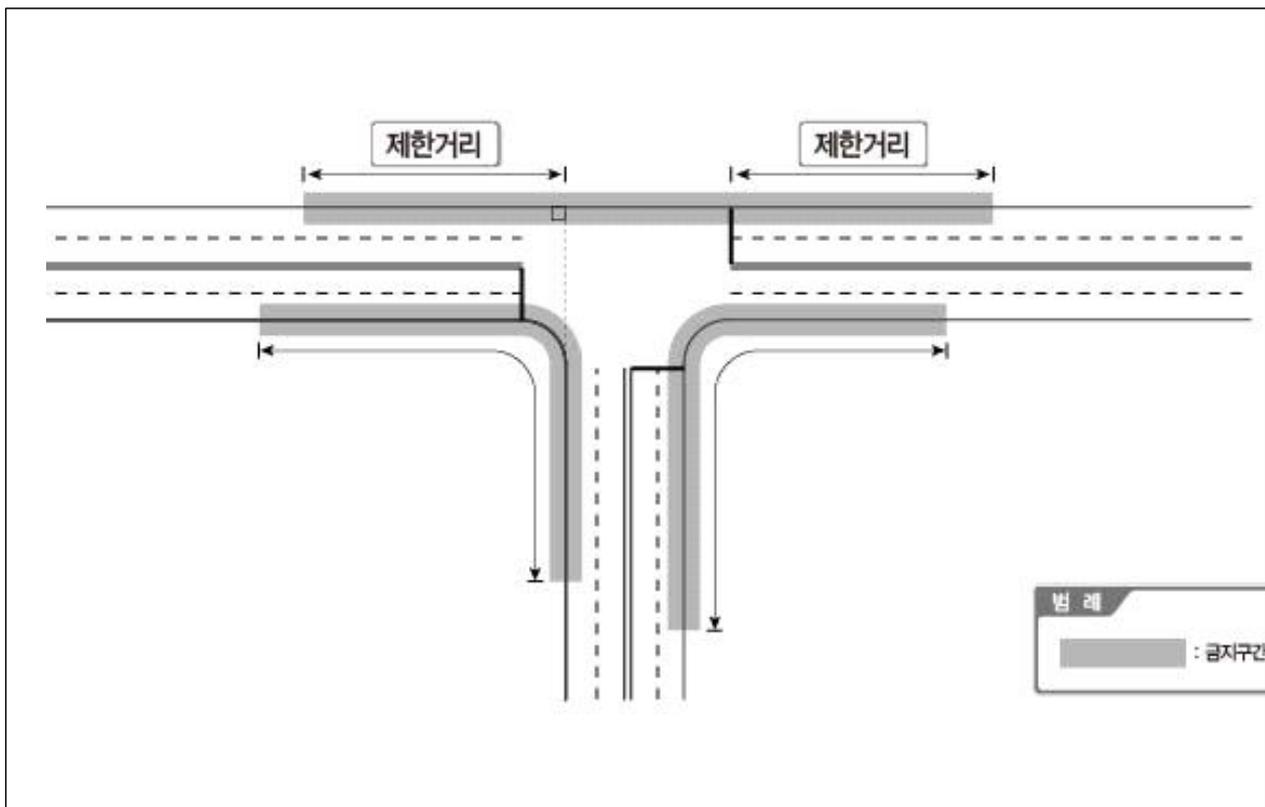
[별표 4]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 기준(제6조제3호 관련)

1. 변속차로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계획이 없는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연결 금지구간은 도로가 교차하는 물리적인 영역과 제한거리로 한다.
 - 나. 제한거리는 감속차선의 경우 차량의 정지선에서부터 산정하고, 가속차선의 경우 교차하는 도로의 연장선과 만나는 지점에서부터 산정하며, 최소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제한거리의 최소길이(미터)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	그 밖의 지역
50	25	40
60	40	60
70	60	85
80	70	100

<예시도> 변속차로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계획이 없는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



2. 변속차로가 설치되었거나 설치예정인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연결 금지구간은 본선 또는 교차도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감속차로 테이퍼의 시작점부터 교차로를 지나 교차도로 또는 본선에 진입하는 가속차로 테이퍼의 종점까지의 범위와 제한거리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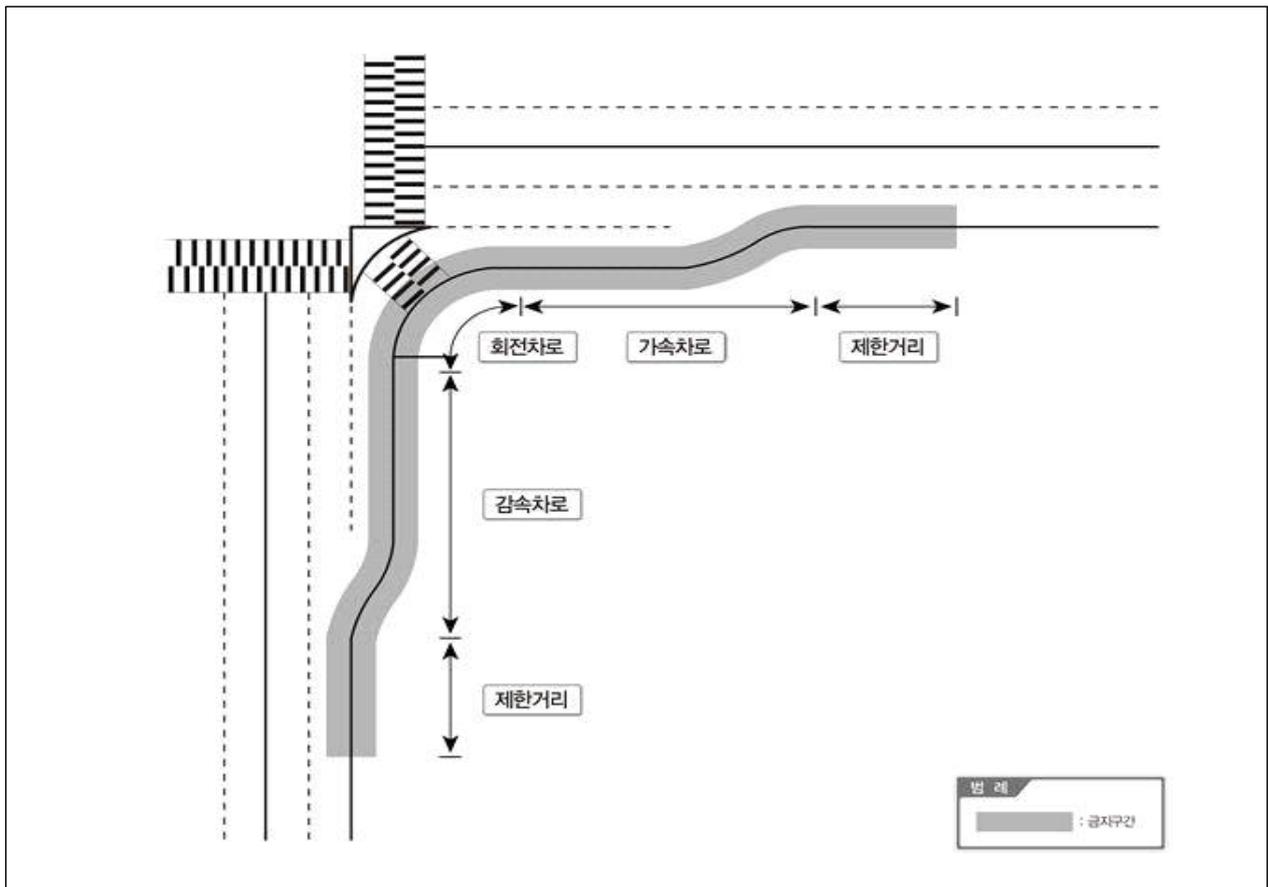
나. 제한거리는 본선 또는 교차도로의 가속·감속차로 전방·후방에서부터 산정하며 최소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구분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	그 밖의 지역
제한거리의 최소길이(미터)	10	20

다.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라.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 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시도> 변속차로가 설치되었거나 설치예정인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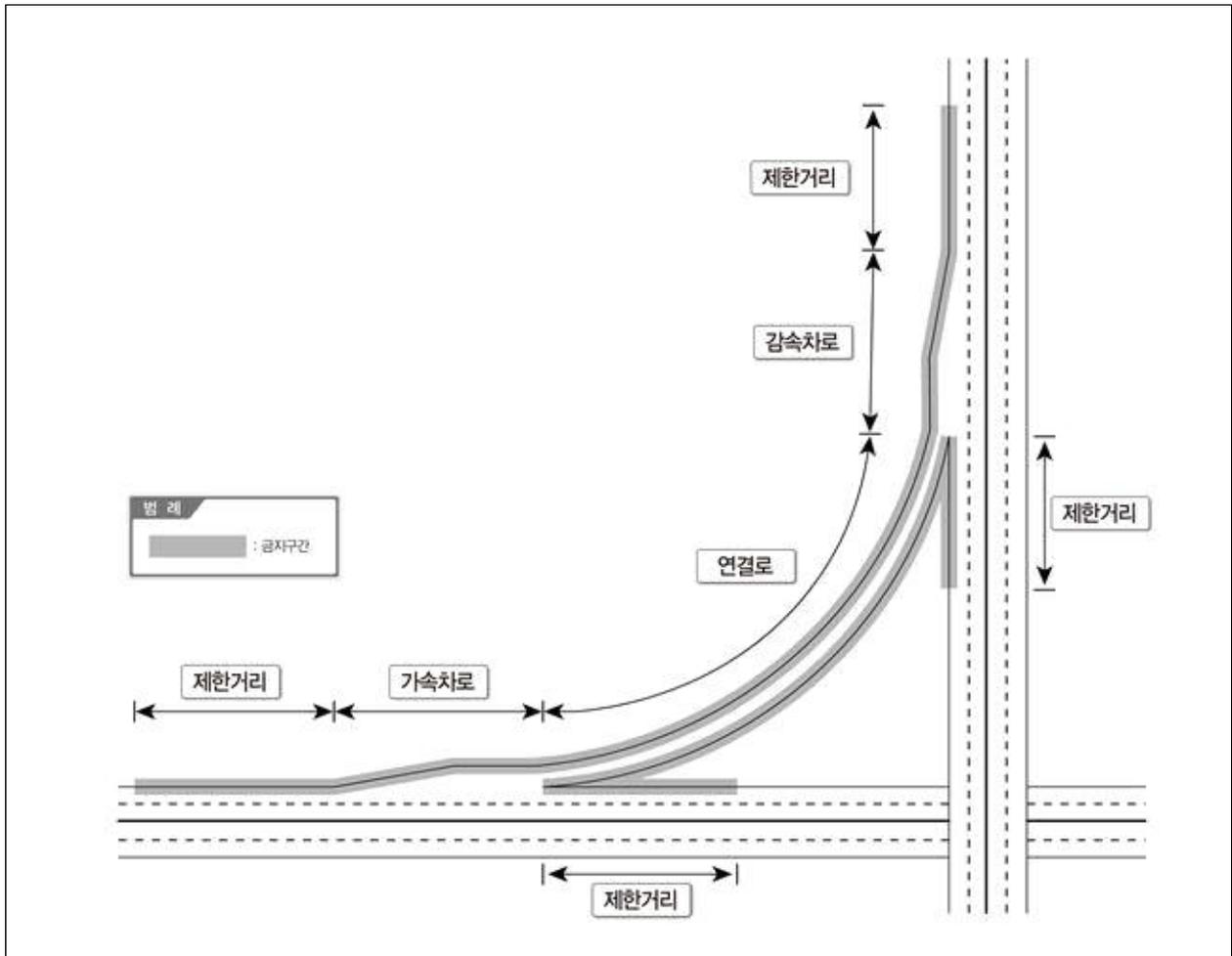
3. 입체교차로에서의 연결 금지구간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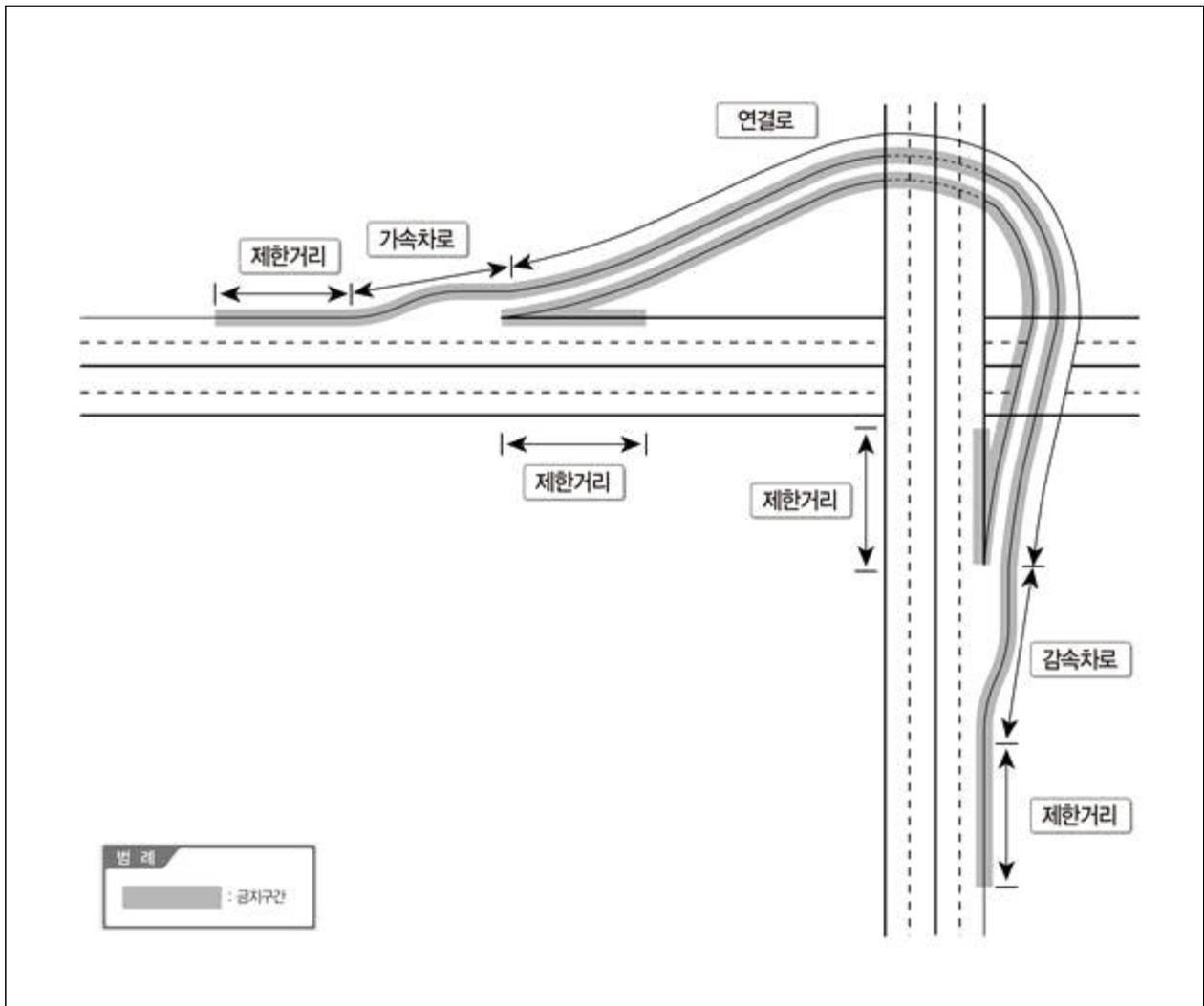
- 가. 연결 금지구간은 본선 또는 교차도로에서 입체교차로로 진입하는 감속차로 테이퍼의 시작점부터 연결로를 지나 교차도로 또는 본선의 가속차로 테이퍼의 종점까지의 범위와 제한거리로 한다.
- 나. 제한거리는 연결로가 접속된 본선 또는 교차도로의 연결로 접속부 전방·후방에서부터 산정하며 최소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구분	4차로 이상	2차로
제한거리의 최소길이(미터)	60	45

- 다.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 라.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 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시도> 입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





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별표 4의2] 삭제

[별표 5]

변속차로의 최소길이(제8조제1호 관련)

1.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 변속차로의 최소길이(단위: 미터)

시 설	주차 대수 (가구수)	감속부의 길이		가속부의 길이	
		감속차로	테이퍼	가속차로	테이퍼
가. 공단 진입로 등	-	40 (25)	15 (10)	65 (45)	20 (15)
나. 휴게소·주유소 등	-	40 (25)	15 (10)	65 (45)	20 (15)
다. 자동차정비업소 등	-	25 (15)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라. 사도·농로·마을진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	통로 등의 폭이 6m 미만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			
	통로 등의 폭이 6m 이상	15 (10)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25(20)	
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	20대 이하	15 (10)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25(20)	
	21대 이상 50대 이하	25 (15)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51대 이상	40 (25)	15 (10)	65 (45)	20 (15)
바. 주차장·건설기계주기장· 운수시설·의료시설·운동 시설·관람시설·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	20대 이하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			
	21대 이상 50대 이하	25 (15)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51대 이상	40 (25)	15 (10)	65 (45)	20 (15)
사. 공장·숙박시설·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	20대 이하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			
	21대 이상 50대 이하	25 (15)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51대 이상	40 (25)	15 (10)	65 (45)	20 (15)
야. 주택 진입로 등	(5가구 이하)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			
	(20가구 이하)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5m)			
	(100가구 이하)	25 (15)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101가구 이상)	40 (25)	15 (10)	65 (45)	20 (15)
자. 농어촌 소규모 시설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	-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			

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 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미터)

시 설	주차 대수 (가구 수)	감속부의 길이		가속부의 길이	
		감속차로	테이퍼	가속차로	테이퍼
가. 공단 진입로 등	-	45 (30)	15 (10)	90 (65)	30 (20)
나. 휴게소·주유소 등	-	45 (30)	15 (10)	90 (65)	30 (20)
다. 자동차정비업소 등	-	30 (20)	10 (10)	60 (40)	20 (20)
라. 사도·농로·마을진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	-	20 (15)	10 (10)	40 (30)	20 (20)
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	10대 이하	20 (15)	10 (10)	40 (30)	20 (20)
	11대 이상 30대 이하	30 (20)	10 (10)	60 (40)	20 (20)
	31대 이상	45 (30)	15 (10)	90 (65)	30 (20)
바. 주차장·건설기계주기장 ·운수시설·의료시설·집 운동시설·관람시설·집 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	30대 이하	30 (20)	10 (10)	60 (40)	20 (20)
	31대 이상	45 (30)	15 (10)	90 (65)	30 (20)
사. 공장·숙박시설· 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	20대 이하	20 (15)	10 (10)	40 (30)	20 (20)
	21대 이상 50대 이하	30 (20)	10 (10)	60 (40)	20 (20)
	51대 이상	45 (30)	15 (10)	90 (65)	30 (20)
아. 주택 진입로 등	(5가구 이하)	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			
	(100가구 이하)	30 (20)	10 (10)	60 (40)	20 (20)
	(101가구 이상)	45 (30)	15 (10)	90 (65)	30 (20)
자. 농어촌 소규모 시설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			

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미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별지 제4호서식]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사서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연결 개요	도로종류 및 노선명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도로의 연결지점
	사용 목적

	시공물량				미시공물량			
	시설명	단위	물량	사업비	시설명	단위	물량	사업비
도로 시설물 시공 현황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현황조사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
------	--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